

#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구 제 운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지난 2000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7054호로 공포하고, 이어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2001년 1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 (붙임참조)

이번 석유사업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부생연료유제도를 도입하여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탄화수소물질로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석유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석유부과금부과 등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석유가스(LPG)와 부생연료유를 품질검사 대상제품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석유업계의 불만이 야기되었던 석유화학부산물의 유통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부산물간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석유가스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난방·취사연료의 연소불량에 따른 소비자불만해소,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미기화 LPG잔량에 대한 분쟁완화와 함께 LPG자동차의 겨울철 시동 불량 문제해소 등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요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석유사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조정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시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종전의 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징수하게 되며,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종전의 1톤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2,842원을 인상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징수하게

되었다.

또한 석유판매부과금은 등유의 경우 종전 1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부탄 및 부생연료유에 대해서도 새로이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 제품으로 추가하고, 그 부과기준을 부탄은 1톤당 19,031원, 부생연료유는 1리터당 17원으로 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인상은 에너지가격개편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국가유공자·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고유가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확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 석유비축 등의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 ■ 부생연료유제도의 도입

부생연료유는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중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물질로서, 국내 일부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이를 등유 등의 대체연료로 목욕탕·호텔·산업체에 판매하여왔으나, 그동안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석유제품이 부담하는 공적의무 및 조세부담이 없어 석유시장에서 기존석유제품과 공정한 시장경쟁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부생연료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석유제품이 부담하는 공적의무 즉, 석유판매업등록, 석유판매부과금부과, 품질검사 등의 공적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또한 특별소비세법개정으로 부생연료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게 되었다. 한편, 부생연료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부생연료유판매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요건으로는 저장시설 40kl 이상 및 수송시설 10kl 이상을 보유하도록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 부생연료유 및 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석유제품별로 용도에 맞게 품질기준을 정하고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생연료유는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의 특성상 품질이 일정치 않고, 석유가스는 작년 연소불량 LPG제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사용한 LPG용기내에 기화되지 않은 가스잔량을 둘러싸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동절기 중 연료의 기화불량에 따른 LPG자동차의 시동불량 사례가 증가한바 있어 소비자보호, 안전위험 및 유통질서혼란 등의 방지를 위해 금번 법령개정시 새로이 품질검사대상 제품으로 추가하였으며, 부생연료유와 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은 제품의 성상·용도 및 환경오염방지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적합성 등의 평가를 거쳐 금년 상반기중에 품질기준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대통령령 제17054호(2000.12.29)

####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용제”를 “용제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동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증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제1호중 “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을 “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등유 및 고급휘발유(자동차용휘발유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를 “등유 · 고급휘발유(자동차용휘발유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 · 부탄 및 부생연료유(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13원”을 “14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908원”을 “9,750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0원”을 “23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 1톤당 19,031원
-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 1리터당 17원

제27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23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별표 1의 등록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용제
	주유소	휘발유 · 등유 · 경유

등록대상	용제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기가 생산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별표 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가. 저장시설	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나. 수송장비	10킬로리터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석유수입 · 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